

(비공식 번역본)
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

제 2/2564 호

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얻기위한 활동범주B에 속하는 사업으로서
최신 기술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또는 로봇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

위 안내사항은 현대적인 기계의 사용과 자동화 또는 로봇의 도입을 장려하기위한 것으로서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16강, 18항, 31항에 따른 활동범주B에 속하는 사업의 생산 및 서비스에 적용이 됨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서 이 활동범주에 속하는 2017년 10월 28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10/2560 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에 따른 추가 권리 및 혜택 획득 조치 제 2/2557 호를 취소하고 다음의 사항을 대신 적용함을 알림

“2번 항목은 해당 기계류를 사용하는 활동범주B에 속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추가 제공하게되는데 이는 생산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최신 시스템 및 자동화와 로봇에 대한 업종은 제외하며, 투자촉진위원회에서 지정한 법인세 면제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정책에 해당됨

- (1) 현대적인 기계류를 통한 생산 및 서비스의 영역에서 자동화 시스템 및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 비용과 순환자본을 제외한 투자금의 50%에 해당하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3년간 부여받게됨
- (2) 관련된 기계류를 사용하거나 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자동화 시스템 및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이 금액이 투자금의 30%이상인 경우 토지 비용과 순환자본을 제외한 투자금의 100%에 해당하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3년간 부여받게됨
- (3) 투자촉진요청서는 2022년 마지막 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함”

2020년 11월 4일부터 적용

2021년 1월 13일에 고시

General Prayut Chan-o-cha

(Prayut Chan-o-cha)

총리

투자촉진위원회장